KOSHA GUIDE

H - 205 - 2018

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

2018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기연
- 제·개정 경과
- 2018년 11월 산업보건일반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W-6-2016, 화학물질의 유해성, 위험성 평가지침
- KOSHA GUIDE W-12-2017,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
- KOSHA GUIDE W-17-2015. 한랭작업환경 관리지침
- KOSHA GUIDE H-131-2013, 혈액원성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침
- KOSHA GUIDE H-66-2012,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
- 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, 위생관리자를 위한 리스크 평가, 2016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36호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·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8년 12월 14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편 제4~6, 8, 12장의 소음·진동, 이상기압, 온도·습도, 병원체,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건강장해 위험성평가"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·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 - (나) "유해·위험요인(Hazard)"이란 유해·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.
 - (다) "유해·위험요인 파악"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.
 - (라) "위험성(Risk)"라 함은 각 유해·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위험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, 부상·질병의 발생 가능성(확률)과 부상·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(심각성)을 조합해서 나타낸 것을 말한다.
 - (마) "가능성(Probability)"라 함은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부상·질병 발생의 확률(빈도)를 의미하며, 노출빈도·시간, 유해·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등을 고려하여 3~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
KOSHA GUIDE

H - 205 - 2018

- (바) "중대성(Severity)"라 함은 유해·위험요인으로 인한 부상·질병이 발생했을 때미치는 영향의 정도(강도 또는 심각성)을 의미하며, 건강영향(장해)의 정도,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3~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.
- (사) "위험성 추정"이란 유해·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.
- (아) "위험성 결정"이란 유해·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.
- (자) "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"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건강장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절차

4.1 개념

(1)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여러 유해·위험요인들 중 직업건강 분야의 다양한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평가·관리하는 산업보건 예방활동이다.

4.2 절차

4.2.1 유해·위험요인 파악

- (1) 사업장내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인 들을 찾아낸다.
- (2) 유해·위험요인을 찾는 관리자(책임자)는 현장 작업내용에 정통하고, 각종 문서(자료) 열람 및 수집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.

- (3) 유해·위험요인을 찾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건강장해 위험성평가의 취지이자 가장 중 요한 요소이다.
- (4)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방법 및 내용

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방법 및 내용은 <표 1>에 따른다.

<표 1> 유해·위험요인 파악 방법 및 내용

방법	파악내용
사업장	작업특성(조건) 파악, 취급 화학물질 파악, 위험작업이나 설비 특이점
순회점검	파악, 설비의 정상 작동유무, 작업장 환경점검 등
	작업공정도,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및 취급량, 작업환
산업보건관련	경측정결과, 건강진단결과,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·위험요인조사 결과,
정보자료	작업허가서, 작업표준절차서, 재해사례 현황, 교육일지, 표지사용 현황
	등
그그키 머다	건강관련 증상호소 유무,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관련 불편내용, 근로
근로자 면담	자 개인특성(흡연, 음주, 질병 등) ※ 개인정보의 경우 비밀보호

4.2.2 위험성 추정

- (1) 유해·위험요인별로 부상·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(등급)을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다.
- (2) 위험성의 크기 산출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각 등급수준에 대해 행렬법, 곱셈법, 덧셈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.
- (3) 여기서의 위험성 추정은 곱셈법(가능성 × 중대성)을 적용하며, 구체적인 방법 내용은 <표 2>를 따른다.

<표 2>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에 따른 위험성 추정 방법(3×3단계 예시)

	중대성	대	중	소
가능성	단계 단계	3	2	1
상	3	9	6	3
중	2	6	4	2
하	1	3	2	1

4.2.3 위험성 결정

- (1) 유해·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다.
- (2) 미리 설정한 위험성 크기별(범위별) 허용가능 여부 기준과 비교한다.
- (3) 최종적으로 위험성 결정은 3단계로 구성되고,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및 개선 방법은 <표 3>에 따른다.

<표 3>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및 개선 방법(3×3단계 예시)

위험성 크기		허용가능 여부	개선방법
5~9	높음	허용 불가능	즉시 개선
3~4	보통) 이중 출기 o	개선
1~2	낮음	허용 가능	필요에 따라 개선

4.2.4 위험성의 개선 및 관리

- (1)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·실행하는 과정이다.
- (2) 가능성(P)과 중대성(S)을 관리하여 낮추는 것이 결국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개선·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.
- (3) 작업시간 및 노출수준과 같은 가능성(P) 등급이 고정적이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건강영향 정도인 중대성(S) 등급을 낮추기 위한 작업환경, 관리적 사항 개선 및 개인특성 관리를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킨다.

- (4) 개선·관리 대책 실행 후 위험성 재평가하여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 인지 확인하고,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크기가 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실행 한다.
- (5) 유해·위험요인 개선·관리에 대한 예시는 <표 4>에 따른다.

<표 4> 유해·위험요인 개선·관리 예시

구분	개선·관리 방안
작업조건 개선 (가능성 관리)	- 공정 자동화 - 작업시간 및 시기조정, 작업전환(변경), 휴식시간 조절 - 작업방법 변경 및 작업속도 조절
작업환경 개선 (가능성 및 중대성 관리)	- 화학물질의 제거·대체·격리 및 사용량 줄임 -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-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, 흡음시설 설치, 대피용 기구 및 구출장비 비치, 안내표지 설치, 세척시설 설치
관리적 사항 개선 (중대성 관리)	- 교육 및 훈련, 운동/스트레칭 및 영양지도,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, 점검결과 기록관리, 요통예방 운동
근로자 개인특성 (중대성 관리)	- 금연 및 금주, 개인질병 관리, 건강진단, 보호구 착용

5. 고열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 적용 예

5.1 고온 환경의 위험성 평가 절차

"고온의 노출수준 분류" \rightarrow "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" \rightarrow "의복의 수준 분류" \rightarrow "작업 X 의복 수준의 예측" \rightarrow "위험성 수준의 평가" \rightarrow "위험성 수준의 수정"의 절차로 수행한 다.

5.1.1 고온의 노출수준 분류

KOSHA GUIDE

H - 205 - 2018

고온의 노출수준 분류는 <표 5>에 따른다.

<표 5> 고온의 노출수준 분류

고온 수준	WBGT치
하	25℃미만
중	25℃이상 ~ 28℃미만
상	28℃이상 ~ 31℃미만
최상	31℃이상

5.1.2 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

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는 <표 6>에 따른다.

<표 6> 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

하	좌식 작업 (평균해서 2METs정도의 총체하중의 경우, RMR=1.2
중	보행 정도의 작업(평균해서 2METs이상의 총체하중의 경우, RMR=1.2
상	속보 정도의 작업 (평균해서 4METs 이상의 총체하중의 경우, RMR=3.6)
최상	대화하면서는 불가능한 작업(평균해서 6METs이상의 총체하중의 경우, RMR=6.0)

^{※ &}quot;METs (Metabolic Eqivalents)"는 신체활동의 강도를 표시하는 단위로, 운동에 의한 에네지 소비량이 안정시대사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냄

5.1.3 의복의 수준 분류

의복의 수준 분류는 <표 7>에 따른다.

<표 7> 의복의 수준 분류

ठो-	T셔츠와 반바지에 해당하는 의복(하기의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의복)
중	반소매 작업복과 얇은 긴바지에 해당하는 의복(하기에 사용하는 가벼운 작업복)
상	긴소매 상의와 얇은 긴바지에 해당하는 의복(양복에서의 정장과 동급의 의복)
최상	화학방호복에 해당하는 의복

5.1.4 작업 X 의복 수준의 예측

^{※ &}quot;RMR"은 에너지 대사율(Relative Metabolic Rate)의 약어로, 육체적 작업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됨

< 표 6>에서 구한 작업 강도 수준과 <표 7>에서 구한 의복 수준을 조합하여 작업 X 의복 수준을 1에서 5의 5단계로 분류하며, 본 절차는 <표 8>에 따른다.

<표 8> 작업 X 의복 수준의 등급 예측

의복 수준	작업 강도 수준			
月	하	중	상	최상
하	1	2	3	4
중	2	3	4	5
상	3	4	5	5
최상	5	5	5	5

5.1.5 위험성 수준의 평가

< 표 5>에서 구한 고온 노출수준과 <표 8>에서 구한 작업 X 의복 수준을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I 에서V의 5단계로 평가하며, 본 절차는 <표 9>에 따른다.

<표 9> 위험성 수준의 평가

작업 X 의복 수준	고온 노출수준			
직접 A 의학 구군	하	중	상	최상
1	I	I	П	Ш
2	I	П	Ш	IV
3	П	Ш	IV	V
4	Ш	IV	V	V
5	V	V	V	V

※ I : 극히 미세한 위험성, Ⅱ : 허용 가능한 위험성, Ⅲ : 중간 정도의 위험성, Ⅳ : 높은 위험성, Ⅴ : 최고의 위험성

5.1.6 위험성 수준의 수정

<표 9>에서 구한 위험성 수준에 대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.

- (1) 고온 작업을 직전 1주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
- (2)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

(3) 직장에 수분, 염분(나트륨)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

5.2 고온 위험성의 관리 및 개선 방안

고온 위험성 수준에 따른 관리 및 개선 방안은 <표 10>에 따른다.

<표 10> 고온 위험성 수준별 관리 및 개선 방안

위험성 수준	개선 및 관리 방안
I (극히 미세한 위험성)	-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 ▶ 작업 개시 전에 식사할 것. 설사나 탈수 상태, 수면 부족을 확인하고이러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 중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▶ 자율신경영향약(파킨슨치료제, 항간질제, 항우울제, 항불안제, 수면제, 항부정맥제 등)을 복용하고 있는 자 및 염분 섭취 제한자(고혈압, 신부전, 심부전등), 갑상선 질환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주치의의의견에 따를 것
Ⅱ (허용 가능한 위험성)	 작업 개선, 작업환경 개선 등과 함께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 ▶ 작업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, 휴식시간 마다 근로자의 자각증상을 조사할 것 ▶ 작업 개시 전에 식사할 것. 설사나 탈수 상태, 수면 부족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 중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▶ 자율신경영향약(파킨슨치료제, 항간질제, 항우울제, 항불안제, 수면 제, 항부정맥제 등)을 복용하고 있는 자 및 염분 섭취 제한자(고혈압, 신부전, 심부전등), 갑상선 질환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주치의의 의견에 따를 것

	기시 성거시 게기
 対 수 ▼ き ▼ き ● ネ ● 本 ● 本<th>작업 환경의 개선 열, 직사광선, 반사광을 차단하는 지붕 설치, 통풍· 냉방· 제습 설비 설등으로 작업장의 온도, 습도, 기류, 복사 등 환경을 개선해서 위험성준 II 이하로 저감하도록 노력 작업의 개선 작업의 위치, 총체하중, 연속 작업시간, 복장, 보호구의 재검토 등을해 위험성 수준 II 이하로 저감하도록 노력휴게 시간 및 휴게 방법의 개선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휴게실을 두고 근로자에게식을 취하도록함. 수분과 나트륨 보급작업의 연속적 감시 등작업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휴식시간 마다 근로자의 자각 증상 및 심수모니터링개인 요인의 배려 - 작업 개시 전에 식사할 것. 설사나 탈수 상태, 수면 부족을 확인하이러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험성 수준 III의 작업에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- 고령이나 비만(체지방율 30% 이상)인 경우 연속적 작업 감시가 어운 위험성 수준 III의 작업에 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- 고령이나 비만(체지방율 30% 이상)인 경우 연속적 작업 감시가 어운 위험성 수준 III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 - 자율신경영향약(파킨슨치료제, 항간질제, 항우울제, 항불안제, 수면, 항부정맥제 등)을 복용하고 있는 자 및 염분 섭취 제한자(고혈압, 신전, 심부전등), 감상선 질환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주치의의견에 따를 것</th>	작업 환경의 개선 열, 직사광선, 반사광을 차단하는 지붕 설치, 통풍· 냉방· 제습 설비 설등으로 작업장의 온도, 습도, 기류, 복사 등 환경을 개선해서 위험성준 II 이하로 저감하도록 노력 작업의 개선 작업의 위치, 총체하중, 연속 작업시간, 복장, 보호구의 재검토 등을해 위험성 수준 II 이하로 저감하도록 노력휴게 시간 및 휴게 방법의 개선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휴게실을 두고 근로자에게식을 취하도록함. 수분과 나트륨 보급작업의 연속적 감시 등작업을 연속적으로 감시하고 휴식시간 마다 근로자의 자각 증상 및 심수모니터링개인 요인의 배려 - 작업 개시 전에 식사할 것. 설사나 탈수 상태, 수면 부족을 확인하이러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험성 수준 III의 작업에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- 고령이나 비만(체지방율 30% 이상)인 경우 연속적 작업 감시가 어운 위험성 수준 III의 작업에 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- 고령이나 비만(체지방율 30% 이상)인 경우 연속적 작업 감시가 어운 위험성 수준 III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 - 자율신경영향약(파킨슨치료제, 항간질제, 항우울제, 항불안제, 수면, 항부정맥제 등)을 복용하고 있는 자 및 염분 섭취 제한자(고혈압, 신전, 심부전등), 감상선 질환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주치의의견에 따를 것

위험성 수준	개선 및 관리 방안
주준 IV (높은 위험성)	 ▶ 작업 환경의 개선 중간 정도의 위험성 수준(III)에 해당되는 개선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▶ 작업의 개선 중간 정도의 위험성 수준(III)에 해당되는 개선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▶ 휴게 시간 및 휴게 방법의 개선 - 임시 휴게시간을 두고,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24~26℃정도의기온을 유지.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수분과 나트륨 보급 -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휴게실의 경우에는 선풍기나 물 미스트의 분사 장치를 이용하거나 통풍이 좋은 그늘을 확보 - 체온을 내릴 수 있도록 음용수를 항상 준비 ▶ 근로자의 심박수 측정 및 작업의 연속적 감시 중간 정도의 위험성 수준(III)에 해당되는 개선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▶ 개인 요인의 배려 - 작업 개시 전에 식사할 것. 설사나 탈수 상태, 수면 부족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험성 수준 IV의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- 고령이나 비만(체지방율 30% 이상)인 경우 가능한 위험성 수준 IV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 - 자율신경영향약(파킨슨치료제, 향간질제, 항우울제, 항불안제, 수면제, 항부정맥제 등)을 복용하고 있는 자 및 염분 섭취 제한자(고혈압, 신부전, 심부전등), 갑상선 질환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주치의의의견에 따를 것 ▶ 순화 기간의 설정위험성 수준 IV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은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함

위험성 수준	개선 및 관리 방안
1	개선 및 관리 방안 ▶ 작업환경의 개선 중간 정도의 위험성 수준(III)에 해당되는 개선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▶ 작업의 개선 - 작업의 위치, 총체하중, 연속작업시간, 복장, 보호구의 재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수준 II 이하로 저감하도록 노력 -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전통팬이 부착된 호흡용 보호구나 송기마스크 등 호흡에 부담이 되지 않는 마스크로 변정하는 것이 바람직 - 병각 효과가 있는 작업복(냉각조끼 등) 사용 ▶ 휴게 시간 및 휴게 방법의 개선 높은 위험성 수준(IV)에 해당되는 개선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▶ 근로자의 체은 등 측정 및 작업의 연속적 감시 - 휴식 시 근로자는 체온, 체중, 심박수, 자각 증상을 체크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고,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스스로 신고하도록 지도 - 귀, 입 안, 혀 밑의 체온 중 하나라도 38.5℃미만(겨드랑이 체온의 경우 38.0℃ 미만)인 경우 고열 작업을 연속 수행해도 되나, 작업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휴식 시간 마다 근로자의 자각증상과 체중을 확인 ▶ 개인 요인의 배려 - 작업 개시 전에 식사할 것. 설사나 탈수 상태, 수면 부족을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험성 수준 V의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- 고령이나 비만(체지방을 30% 이상)의 경우는 가능한 위험성 수준 V의 작업에 중사하지 당도록 권고 - 자율신경영향약(파킨슨지료제, 향간질제, 항우울제, 항불안제, 수면 제, 항부정맥제 등)을 복용하고 있는 자 및 염분 섭취 제한자(고혈압, 신부전, 심부전등), 감상선 질환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주치의의 의견에 따를 것 ▶ 순화 기간의 설정 위험성 수준 V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당 작업
	에 배치할 때는 작업 개시 후 3일간은 연속 작업시간을 이전의 절반 이하로 하고 휴게시간을 최소 30분마다 설정